

의안번호	2219349
의 퇴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 9. 4.
추계번호	26B31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정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을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생활환경정비사업 범위에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 현행법 제2조제10호¹⁾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현행법 제71조²⁾에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기술지원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비·확충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사업 규모, 추진 방식(지원 비율, 대상 지역, 지원 물량 등)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결정될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주체별 재정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위진수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위진수	02-6788-4650	wjinsu@assembly.go.kr